

남북상사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1980) 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operation Ways of South-North Korea for
Revitaliz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 Centering around Evaluation of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2008) of North Korea -

김 광 수*
Kwang-Soo Kim

〈목 차〉

- I. 서 론
- II. 북한 대외중재법(2008)의 주요개정 내용 및 평가
- III. 남북상사중재제도의 협력방안
- IV. 결 론

주제어 :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남북상사중재 후속조치, 공동중재규정

* 경영학박사,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겸임교수

I. 서 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남북한은 최악의 군사적 긴장상태에 있다. 북한의 간헐적 대화제의에 군사 분야에서 회담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긴장상태에 지쳐있는 국민들은 향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¹⁾

통일부는 지난해 말 업무보고를 통해 2011년을 통일준비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책목표를 밝혔다.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시대에 대비해 법, 제도를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통일부는 “남북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 이후, 2007년 남측상사중재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하고 공동중재규정 초안을 마련하는 등 합의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했으나 현재 사실상 남북상사중재에 관한 후속조치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²⁾

그동안 북한 측에서는 2008. 7.21. 대외경제중재법을 개정하였다.³⁾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표준중재법의 일부개정(2006)과 표준중재규칙의 개정(2010)에 따라 중재법 개정작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규칙⁴⁾과 국제중재규칙의 개정작업을 착수하여 현재 대법원에 승인요청중이다.

남북상사중재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 두 개의 합의서상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⁵⁾ 그 중에서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후 공동중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새로운 대외중재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후 남북 공동중재규정의 제정 연구에 반영하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1) 통일신문(516호), 2011, p.1.

2) 통일부와 대한상사중재원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사무처리 업무위탁협약(2007.4.16.)

3) 집행법규인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정(1999)”의 개정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

4) 2008. 11. 13. 대법원 승인 현행 중재규칙: 총 9장(제1장 총칙, 제2장 당사자의 합의, 제3장 중재의 신청, 제4장 중재인의 선정, 제4장 심리절차, 제6장 특별조항, 제7장 판정, 제8장 신속절차 제9장 중재비용), 부칙 및 부표(요금표)로 구성되어 있다.

2007. 1. 25. 대법원 승인 국제중재규칙: 표준중재조항, 총 7개 본문(총칙, 중재개시, 중재판정부, 중재절차, 중재판정, 비용, 기타), 부칙, 별표 I(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 별표 II(중재인의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 7. 1. 시행 국내중재규칙(안): 총 8장(제1장 총칙, 제2장 중재의 신청, 제3장 중재인의 선정, 제4장 심리절차, 제5장 특별조항- 이의신청 . 제6장 판정, 제7장 신속절차, 제8장 중재비용), 부칙, 부표(요금표)로 구성되어 있다.

2011. 7. 1. 시행 국제중재규칙(안) : , 표준중재조항, 총 8장(제1장 총칙, 제2장 중재개시, 제3장 중재판정부, 제4장 중재절차, 제5장 판정 . 제6장 신속절차(신설), 제7장비용, 제8장 기타, 부칙, 별표 I(신청요금과 관리 요금에 관한 규정), 별표 II(중재인의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공동중재규정 제정, 남북중재사무처리기관 지정, 중재인단 구성

것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중재제도와 대외경제중재법 등 중재관련법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남북상사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료 수집의 한계 등으로 남북간 중재법규를 자세하게 비교를 할 수 없었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Ⅱ. 북한 대외중재법(2008)의 주요개정 내용 및 평가

1. 북한의 ADR제도

북한에서 국제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법, 민사소송법, 대외경제중재법, 대외민사관계법 등에 의해 소송 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협의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다. 북한의 중재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대외경제중재법과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정(종전의 사건심의규정)이 있다. 대외경제 상설중재기관으로는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KITAC)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 (KMAC)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과 투자분쟁에 관한 워싱턴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국제무역 및 투자분쟁과 관련한 중재는 주로 북한 국내법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외에 협의, 화해 및 조정에 의한 해결 방법이 있다. 협의에 의한 해결은 대외경제계약법, 합영법, 대외경제중재법 등 대외무역관련법들에 규정되어 있다.

2. 북한 대외중재법(2008)의 주요 개정내용 및 평가

(1) 중재법과 국가중재제도

1) 중재법(1995)

북한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 1995년에 제정된 중재법⁶⁾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기관이나 기업소 및 단체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6) 제1장 중재법의 기본에서는 국가중재의 목적 및 중재사건처리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일반규정에서는 중재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중재관할에서는 중재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경계가 되는 도 및 중앙의 관할문제, 제4장에서는 중재제기, 제5장에서는 중재준비, 제6장은 중재심리, 제7장에서는 재결 및 결정, 마지막 제8장에서는 재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중재제도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은 현재 중앙중재기관과 도 중재기관의 2급 1심재 체제로 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중재를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권력적인 재판활동이며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한 계약을 준수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행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중재제도는 북한의 국내 기업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⁷⁾

(2) 대외경제중재법과 대외중재제도

1) 개관

북한에서의 무역중재는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심의 해결하는 중재라고 정의되며 북한의 무역기관과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무역회사들 간에 맺어진 무역계약의 진행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재결원을 선정하고 심의 해결하는 민사재판의 한 형식이라고 이해한다.⁸⁾

북한은 199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였다. 대외경제중재 법이 채택되기 전, 북한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 1995년에 제정된 중재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995년 중재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기관이나 기업소 및 단체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중재에 관한 통일법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특히 대외중재와 관련해서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었다.⁹⁾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대북투자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북한의 해외자본 및 기술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법적 제도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¹⁰⁾.

북한의 최근 대외경제중재법(2008)은 용어 관련 규정의, 임시적보전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조문 정비했다. 그러나 북한이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대외경제중재법이 유엔의 표준중재법 등 국제적인 관행 반영에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어 그 활용과 적용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7) 권재열 등, 앞의 책, p.335

8)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1977), 평양 사회안전출판사, p. 218

9)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교류법령의 주요 논점"(‘앞의 글’이라 함),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15차 회의 결과보고, 법원행정처(2001), p.182

10) 권재열 등, 앞의 책, p.325

2) 대외경제중재 관련법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과 외국인투자 관련법상의 분쟁해결 조항을 보면 당사자 간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

대외경제계약법 제42조, 외국인투자법 제22조¹²⁾와 합영법 제42조¹³⁾,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3조에서 “제3국의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함으로써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합작법이나 외국인기업법에서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3) 북한의 신·구 대외경제중재법 간의 주요 내용 비교

(가) 구성

북한의 구 대외경제중재법은 총 4장 43개 조문¹⁴⁾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법은 총 8장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⁵⁾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는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합의에 따라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한 분쟁을 재판소의 판결이 아닌 중재부의 재결로 해결하는 중재제도이며 중재합의는 당사자사의 계약 또는 그 밖의 경제와 법률관계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한 약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신 대외경제중재법¹⁶⁾은 총 7개장 65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각 장은 제1장에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¹⁷⁾ 제2장은 중재합의¹⁸⁾, 제3장은 중재부¹⁹⁾, 제4장은 중재절차²⁰⁾, 제5

11) 대외경제계약법 제42조: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12) 외국인투자법 제22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13) 합영법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14)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제2장 중재제기, 제3장 중재심리, 제4장 재결과 그 집행

15) 한국 중재법: 총 8장(제1장 총칙, 제2장 중재합의, 제3장 중재판정부, 제4장 중재절차, 제5장 중재판정, 제6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승인,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8장 보칙)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 총 8장 (제1장 총칙, 제2장 중재합의, 제3장 중재부의 구성, 제4장 중재판정부의 관할, 제5장 중재절차의 진행, 제6장 중재판정문의 작성과 중재절차의 종료, 제7장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제8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2008. 7.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6호 자료: 북한법연구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제공

17) 신 대외경제중재법 제1조(대외경제중재법의 사명), 제2조(신설: 용어의 정의· 대외경제중재, 중재합의, 중재부, 재결, 외국적 요소, 중재위원회, 재판기관, 해당기관, 조정), 제3조(신설: 대외경제중재의 특성), 제4조(대외경제중재로 해결하는 분쟁), 제5조(신설: 중재의 당사자), 제6조(분쟁해결원칙), 제7조(신설: 통지의 효력), 제8조(신설: 의견제기권과 그 효력), 제9조(신설: 중재사건의 이관), 제10조(신설: 중재부의 독자성 보장), 제11조(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장은 재결²¹⁾, 제6장은 재결의 효력 및 취소제기²²⁾와 제7장 재결의 집행²³⁾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제정취지 및 목적

구법과 신법 모두 제1장에서 그 목적을 대외경제 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 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다) 중재위원회와 중재의 대상

구법에는 중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²⁵⁾들로 구성하며, 분쟁심리대상은 첫째,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둘째,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셋째,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넷째,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다섯째, 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여섯째,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해외조선동포, 외국인 사이에 생긴 분쟁 등이라 규정함으로써 그 심리에 있어 분쟁해결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²⁶⁾. 그러나 신법에는 중재위원회를 상설 중재기관으로 특정하고 대외경제로 해결하는 분쟁을 당사자 합의와 국가가 위임한 분쟁으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²⁷⁾

- 18) 신 대외경제중재법 제 12조(신설:중재합의와 그 방법), 제13조(신설:중재합의의 형식), 제14조(신설:서면합의가 없어도 중재합의로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신설:중재합의의 무효사유), 제17조(신설:중재제기조건), 제18조(중재제기방법과 접수 및 부결통지), 제19조(대리인에 의한 통지)
- 19) 신 대외경제중재법 제20조(중재부의 구성), 제21조(중재원의 선정절차), 제22조(신설:중재원선정에서 중재위원회의 의무), 제23조(중재원의 자격), 제24조(신설:중재원의 배제사유), 제25조(신설:중재원의 배제절차), 제26조(신설:중재원의 사업,교체사유), 제27조(신설:중재원을 다시 선정하는 절차), 제28조(신설:중재부의 권한), 제29조(신설:중재부와 관련한 의견제기), 제30조(신설:중재부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처리), 제31조(신설:임시조치), 제32조(신설:임시조치의 해제,취소):
- 20) 신 대외경제중재법 제33조(신설:당사자들의 지위), 제34조(신설:중재절차의 결정), 제35조(신설:중재장소), 제36조(신설:중재의 시작일), 제37조(신설:중재언어), 제38조(신설:청구와 항변), 제39조(신설:중재심리방식), 제40조(신설:당사자의 권리불리행에 대한 처리), 제41조(감정인, 중인), 제42조(신성:증거조사의 의뢰), 제43조(신설:증거조사결과의 통지), 제44조(맞중재)
- 21) 신 대외경제중재법 제45조(신설:재결의 준거법), 제46조((신설:중재부의 의사결정방법), 제47조(화해), 제48조(조정), 제49조(재결문의 작성형식), 제50조(재결문의 내용), 제51조(재결문의 발송), 제52조(신설:중재의 종결), 제53조(재결문의 정정, 해석 및 추가재결의 신청) 제54조(재결문의 정정, 해석 및 추가재결)
- 22) 신 대외경제중재법 제 55조(신설:재결의 효력 발생일), 제56조(재결에 대한 취소제기), 제57조(신설:재결의 취소제기사유), 제58조(신설:재결취소신청의 유효기간), 제59조(재결의 취소와 관련한 재판기관의 조치)
- 23) 신 대외경제중재법 제 60조(신설:재결의 집행), 제61조(재결의 집행신청), 제62조(신설:재결의 집행,제재조치), 제63조(해당나라의 재판기관에 집행신청), 제64조(신설: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과 집행), 제65조(신설: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거부사유)
- 24) 신 구 대외경제중재법 제1조
- 25) 중재규정(1999) 제2장 제9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서기장은 재결원이 될 수 있다. 위원회는 서기를 둔다.
- 26) 대외경제중재법 제4조
- 27) 신 대외경제중재법 제2조 6항 및 제 4조

(라) 중재제기

구법²⁸⁾에서는 분쟁당사자는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중재제기는 시효기간 내에 중재제기서와 그에 첨부할 문건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중재제기시 중재위원회는 중재제기문건을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접수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피신청자는 제기된 중재에 대하여 맞중재(반대신청)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중재(본신청)와 직접 관련 되는 것이어야 하고 중재심리가 끝나기 전에 중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중재를 제기하거나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는 북한의 공민이나 외국인이 될 수 있고 대리인은 중재위원회에 대리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 대외경제중재사건이나 재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기관은 해당 문건을 소송제기자(원고)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였다.

반면 신법을 보면 중재제기(신청)시 중재위원회는 중재제기문건을 5일(구법: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접수통지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당사자(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피신청인)는 제기된 중재에 대하여 맞중재(반대신청)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본중재(본신청)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중재심리가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중재를 제기하거나 항변(구법: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는 북한의 공민이나 외국인이 될 수 있고 대리인은 중재부(구법: 중재위원회)에 대리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구법에는 중재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 대외경제중재사건이나 재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기관은 해당 문건을 소송제기자(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법에는 외국적요소와 함께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는 대외경제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국가가 대외경제중재절차로 해결하도록 위임한 중재사건이 재판기관에 제기되었거나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고도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사건을 중재위원회에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중재심리

구법에서의 중재심리²⁹⁾는 재결원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결원협의회(중재판정부)에서 진행하고 재결원은 분쟁사건처리에서 독자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분쟁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결원명부에서 재결원³⁰⁾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선정한다. 분쟁을 심리 해결하기 위한 재결원의 수는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며 분쟁

28) 구 대외경제중재법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29) 대외경제중재법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4조

30) 신대외경제중재법 제23조 및 중재규장(1999) 제 12조법률, 경제, 과학기술 및 기타분야의 전문지식과 실천경험이 있는자(변호사, 판사, 해외조선동포 및 외국인 등), 한국은 중재법과 규칙에 자경에 관한 근거가 없다.

당사자들이 재결원의 수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그 수를 결정한다.

중재심리 중에 화해와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인과 분쟁 당사자들로 구성된 조정회의에서 조정인이 제출한 안에 쌍방이 동의해야 한다.

신법에서의 중재심리는 재결원(중재인)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부(구법:재결원 협의회, 중재판정부)에서 진행한다. 중재인 선정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3인 중재부와 1인 중재부로 구별하여 중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¹⁾구법에는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³²⁾ 심리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법에는 삭제되었다. 아마 중재규정에 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재심리 중에 화해와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신법에는 구법과 달리 화해와 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 재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재결과 집행

구법에서의 재결³³⁾은 중재심리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선고하고 재결문의 효력은 재결원의 수표와 중재위원회의 공인에 의해 발생한다. 3명의 재결원이 분쟁을 심리한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재결원은 재결문에 수표하지 않고 중재심리조사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 있는 분쟁당사자가 재결문에 따른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편 당사자는 의무이행당사자의 거주지나 집행대상의 재산 소재지의 재판기관에 해당 재결집행(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집행대상 재산이 북한 영역 밖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 재판기관에 재결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구법에는 심리는 중재문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개월을 넘을 수 없고 재결은 중재심리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법에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재결문의 정정이나 해석은 30일안에 추가재결은 45일이내 추가 재결을 내릴 수 있는 규정과 재결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외경제중재에는 지역관할과 심급을 두지 않고 중재부가 내린 재결을 최종결정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³⁴⁾ 그리고 중재부의 의사결정은 다수가결로 하고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중재부구성

31) 한국중재법 제12조: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2) 중재심리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재결원협의회가 정하되, 중재위원회는 중재심리 시작하기 30일전까지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심리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려 주어야 한다. 중재심리의 장소는 해당 중재위원회의 소재지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중재심리를 공개로 할 수 있다.

33) 대외경제중재법 제35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책임중재원(의장중재인)이 의사결정을 하며 재결의 효력은 재결문을 작성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결문에는 중재원의 수표가 있어야 하며 3인 중재부의 경우 과반수 중재원의 수표가 있어야 한다.

재결에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그것을 취소시켜줄데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취소제기는 재판기관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법과 달리 재결의 취소제기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⁵⁾ 재판기관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취소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중재심리를 다시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책임 있는 당사자가 재결문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리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리행할 경우 상대방당사자는 재판기관 또는 해당기관에 재결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집행문에 따라 재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거나 경제활동중지, 벌금부과, 몰수, 출입국정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결집행대상 재산이 북한 영역 밖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나라의 재판기관에 재결집행을 신청(구법:의뢰)할 수 있다. 외국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과 집행은 북한의 해당법규에 따르고 외국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⁶⁾

(사) 북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승인과 집행의 의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란 외국의 중재기관 또는 국제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의 효력을 국내에서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그의 내용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중재가 당사자가 목적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의 중재기관 또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는 일반국제법에 의해 주권국가에 일임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는 것을 국제예약에 기초한 것이며 국제법에 의하여 강제될 것이 아니다.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인정하는 방법으로는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방법³⁷⁾과 국제조약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다자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

34) 신 대외경제주재법 제3조(대외경제중재의 특성)

35) 신 대외경제주재법 제57조(재결의 취소제기사유)

36) 신 대외경제주재법 제65조(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거부사유)

37) 국내입법의 대표적인 예로 1929년의 스웨덴의 중재법, 1930년의 독일민사소송법(1044조), 1957년 영국의 중재법이 있다.

약”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② 북한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문제점

외국중재판정 또는 국제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북한의 외국인 투자자에 관련한 국내법은 물론 관련 중재법규인 1989년의 “중재사건 심의규정”과 1999년의 “중재규정”에는 그 해당규정이 없다. 그리고 2008년의 “대외경제중재법”에는 그 근거규정³⁸⁾을 북한의 해당법규에 따른다는 애매한 규정만 두고 있고 더구나 북한은 1958년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재판정이 북한 외의 국가나 국제기구의 중재기관에서 내려진 경우, 북한이 이를 승인하고 집행해야 할 일반국제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그러한 중재판정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신대외경제중재법의 평가

구대외경제무역법의 문제점으로 대외경제중재법 외에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대외경제계약법 상의 중재에 관한 규정과의 적용상 충돌의 가능성의 존재와 조항의 구체성 결여 등을 지적하였다.³⁹⁾.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중재에 관하여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킬 것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일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참여 및 대외경제시장 개방의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⁰⁾. 하지만, 이러한 대외경제중재법의 규정과는 달리 북한은 국제중재와 관련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실효성은 의문으로 남는다.

신대외경제중재법의 특징으로 당사자의 사촌중의 원칙확인,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의 보장과 과실당자 책임부담원칙, 새로운 조항 신설을 들 수 있다.⁴¹⁾

북한의 새로운 대외경제중재법을 평가하면 첫째로 임의중재는 인정하지 않고 기관중재만 인정하고 있다. 둘째 용어의 정비, 중재부의 권한 확대, 임시적보전조치의 조항 설정, 외국적요소의 개념정의, 타국 중재부의 재결에 관한 규정 및 재결의 취소사유와 집행거절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신청자, 피신청자, 피고, 원고에 대한 용어가 불확실하게 규정되는 등 법의 체계 및 그 내용에 있어서 국제적인 관례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

38) 신대외경제주재법 제64조(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과 집행)

39)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대외경제중재법을 중심으로”(‘앞의 글2’라 함), 북한법연구 제4호(2002), p.82

40) 대외경제중재법 제4조

41) 장명봉, 북한의 새로운 대외경제중재법(2008)개관, 중재 제333호(2010년 가을호), 대한상사중재원, p46-p48.

다. 셋째 중재규정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이 많다. 넷째 대외중재법이 중국 중재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맞중재와 임시적처분 같은 조항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외경제중재법의 규정이 법 집행을 위한 중재규정의 내용과 거의 같고 중재규정에 업급될 내용이 법에 규정된 것이 많다.

한국중재법과의 차이점으로 첫째로 한국중재법은 국내와 국제중재가 모두 적용되나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중재에만 적용된다. 둘째 한국중재법은 민사와 상사중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외경제중재법은 주로 상사중재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한국중재는 임의중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외경제중재법은 인정치 않고 있다. 넷째 본안전방소항변, 중재부의 구성, 중재원의 자격규정, 임시조치에 대한규정, 조정에 관한 규정, 재결의취소제기 사유 등이다.

중재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으로 첫째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분쟁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중재를 제기하거나 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는 공화국 공민이나 외국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리인의 자격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 또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재결원의 구성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⁴²⁾.

둘째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의 내용을 보면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 거래액이 많거나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계약의 체결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⁴³⁾ 나라의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은 무효임을 천명하고 있다⁴⁴⁾. 이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계약 자체가 북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중재의 대상은 물론 기본적인 계약의 효력마저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⁴⁵⁾.

(4)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사건 심의규정(1989)과 중재규정(1999)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북한의 국제무역중재기관으로서 북한에서의 무역중재를 전담 해결하는 기관이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도 원칙적으로 중국의 국제경제무역중위원회의 중재인단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재결원(중재인단은 종전 17명에서 30명 수준으로 증원되었다. 중재인들은 거의 직업 중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중재인의 국적은 제한이 없으나

42) 권재열 등, 앞의 책, p.119

43) 대외경제중재법 제11조

44) 대외경제중재법 제18조

45) 박정원, 앞의 글1, p.182

현재 외국 국적 중재인은 없다고 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의 소재지와 사건 심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평양이다 그러나 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양시 밖의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중재규정에 라선지구 사무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라진과 선봉지역에서의 심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⁴⁶⁾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부위원장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을 대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장중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기장은 분쟁사건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발송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모든 사건 심의에 참석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사건심의규정은 우리 중재원의 중재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8장 57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건 심의규정의 제1장(제1보 - 제6조) 일반규정에는 무역중재의 대상, 준거법 및 중재장소, 중재언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제2장(제7조 - 제12조) 무역 중재위원회와 그 임무 규정에는 무역중재위원회 구성원들을 제결원(중재인)명단에 등록하거나 제명하는 것은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3장(제13조 - 제20조) 중재신청서 및 항변서(답변서)의 제출 관련 규정에는 중재신청이 취소되는 사유 및 신청서와 항변서의 작성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제4장(제21조 - 제29조)에는 재결원의 지명 및 배제에 관하여, 제5장(제30조 - 제45조)에는 사건심의 및 재결에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제6장(제46조 - 제48조)에서는 중재심의 중지 및 재개에 관한 사항이 제7장(제49조 - 제54조)에는 조정집행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고 마지막 제8장(제55조 - 제57조)에는 중재요금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신대외경제중재법의 집행 중재규칙의 존재여부는 현재 확인 중이다. 최근 수집한 자료는 1999년에 개정된 중재규정이다.⁴⁷⁾

46)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정(1999) 제5조 및 제10조

47) 중국 북경의 정윤호 변호사가 필자에게 제공한 자료: 최근 알려진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규정(1999년 11월 13일 내각결정 제83호)에 의하면 총8장(제1조 일반규정, 제2장 중재위원회 제3장 중재제기 제4장 재결원협의회, 제5장 중재심리, 제6장 화해 및 조정, 제7장 재결과 그 집행, 제8장 중재비용, 부록 중재비용표) 7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 남북상사중재제도의 협력방안 48)

1. 남북교역의 현황

1) 거래유형별 교역구조

현재의 남북교역 통계는 거래유형을 크게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상업적 거래는 다시 교역(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과 경제협력사업(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경공업협력사업, 기타 경제협력 등)으로 분류된다. 비상업적 거래는 대북지원(민간지원과 정부지원)과 사회문화협력사업에 따른 물자 이동, 그리고 경수로건설사업(경수로 건설과 KEDO 중유 지원)과 에너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최근 남북경색으로 남북 경협과 교역이 주춤한 상태에 있다. 거래규모를 별개로 하고 남북 간 경제거래에는 다른 국과와의 거래에서와 같이 분쟁이 수반된다. 아직까지 남북 간 상사분쟁의 현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분쟁의 해결을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남북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남북교역의 규모와 비중(표 1)

단위(미화 백만달러, %)

연 도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합 계
	반 출		반 입		반출입		반 출		반 입		반출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2003	140.5	32.3	289.3	100.0	429.8	59.3	294.4	67.7	0.0	0.0	294.4	40.7	724.2
2004	178.5	40.6	258.0	100.0	436.5	62.6	260.5	59.4	0.0	0.0	260.5	37.4	697.0
2005	349.5	48.9	340.0	99.9	689.5	65.3	365.9	51.1	0.3	0.1	366.2	34.7	1055.8
2006	409.7	49.3	518.4	99.8	928.1	68.8	420.5	50.7	1.2	0.2	421.7	31.2	1349.7
2007	663.2	64.7	765.3	100.0	1428.5	79.8	362.4	35.3	0.0	0.0	362.5	20.2	1790.9
2008	779.7	87.8	932.2	100.0	1711.9	94.0	108.4	12.2	0.1	0.0	108.5	6.0	1820.4
2009	707.9	95.0	934.2	100.0	1642.1	97.8	37.0	5.0	0.0	0.0	37.0	2.2	1679.1

통일연구원 2010 자료 참조 작성(북봉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48) 김광수, "남북상사중재 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2007) 참조('앞의 글1'이라 함)

2. 남북상사중재합의서 상의 남북상사중재의 법·제도적 구조⁴⁹⁾⁵⁰⁾

(1) 기본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 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 분쟁해결의 기본적 해결방향은 당사자간의 협의가 제1의 원칙임을 동 합의서는 명시하고 있다.

(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기능 및 의사결정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한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동 위원회는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 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처리 외에도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중재인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3) 남북상사중재의 대상

남북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양 당사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분쟁사건을 관할한다. 또한 남북의 일방이 투자보장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분쟁사건(중재합의가 없는 사건)도 관할한다.

(4) 중재인단 구성과 중재인명부의 교환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로 각기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 중재인에 대한 별도의 국적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쌍방은 각기 자기측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중재사무처리기관 지정

남과 북은 중재사무처리기관을 각기 지정해야 하며 중재사무처리기관은 중재인명부 보존, 중재서류보존, 위원장이 지정한 문제처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49) 김광수, 앞의 글1 참조

50) 이주원, “개성공단 법제 인프라 구축 방안 중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상사분쟁 해결방안”, 2006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발표논문집(2006) 참조

(6) 중재절차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인이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후 중재판정을 한다.

(7) 중재판정부 구성방법

양 당사자가 각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한 후 중재인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중재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8) 중재판정의 취소 신청

남북상사중재의 당사자는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중재판정취소신청의 심의 개시후 3개월 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3. 남북상사중재제도 협력방안⁵¹⁾⁵²⁾

(1)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 및 중재사무처리기관 지정에 관한 협력

현재 남북한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선정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정식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를 정식 발족시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서기를 지정하고 보좌인원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상사중재규정 초안 교환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07년 5월 2일 업무위수탁협약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을 우리측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협약은 현재 종료된 상태로 협약갱신 등을 통하여 중재사무처리 기관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측은 아직 중재사무처리기관을 지정 하지 않아 조속

51) 김광수, “남북상사중재 제도 정착화를 위한 과제”, 2007 농북아 교역활성화 국제포럼, 한국중재학회(2007) 참조(‘앞의 글2’라 함)

52) 이주원 · 신군재,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규칙의 제정방향”,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2007) 참조

히 북축 중재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3) 남북한 중재법·제도의 비교연구 및 국제기구(UNCITRAL 및 ICSID)측과의 업무 협조 체제 구축

공동중재규정의 제정을 위해서 남북한의 중재법, 중재기관의 규칙 비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UNCITRAL 중재법제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중재판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북한이 뉴욕협약과 위싱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제기구 측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분쟁해결 합의서에 의하면 남북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 간에 협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ICSID에 의장중재인 선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어느 중재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하여 선정할 것인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ICSID 측과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 따라서 남북한과 ICSID측이 실무적 절차에 관한 업무협조 체제의 구축이 있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남북상사중재제도 협력방안의 선결과제는 남북합의서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후속조치 중 중요한 요소가 공동중재규정의 제정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최근 대외 경제중재법과 관련 절차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관계 및 대북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남북상사중재제도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남북상사중재가 조속히 가동되고 남북상사중재의 중심에서 있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발족되어야 한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개정과 관련하여 남북 당국 간의 상사중재협력방안에 대하여 아래의 몇 가지를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남북공동중재규정의 제정을 위한 양측 중재법규를 비교 연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에 영향을 미친 중국 중재법규와 UNCITRAL 표준중재법규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상사중재가 가동되면 그 후속조치로서 공동중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 유엔에서도 중재법규가 개정되고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도 개정되었다. 우리 중재법 체계와 다른 북한과 중국의 중재법규를 조사하고 우리 법제와 비교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향후 개정될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과 북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규정을 수집하여 비교할 필요성이 있

다. 아울러 매년 개최되는 동북아국제중재회의⁵³⁾에서 남북상사중재를 의제삼아 토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관련 정부부서, 유관기관은 물론 학계에서도 남북교역 분쟁의 예방과 해결과 관련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⁵⁴⁾ 둘째, 관련 합의서의 후속조치를 위해서라도 공동중재규정의 우리 측 초안 마련 등을 위한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업무재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도 중재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양실무기관이 업무 협조약정을 체결할 필요성도 있다. 셋째 정부와 중재 관련 실무기관은 국제회의 등에서 북한 중재판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뉴욕협약 가입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보제공 및 실무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자료

김광수, "남북상사중재 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남북상사중재 제도 정착화를 위한 과제", 2007 동북아 교역활성화 국제포럼, 한국중재학회, 2007

김광수 외,"개성공단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10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교류법령의 주요 논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15차 회의결과보고, 법원행정처, 2001

"북한의 대외경제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대외경제중재법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제4호, 2002

북한대외경제중재법, 2008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제1권), 박영사, 2007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평양 사회안전출판사, 1997

이주원, "개성공단 법제 인프라 구축 방안 중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상사분쟁 해결방안", 2006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6

이주원 · 신군재,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규칙의 제정방향", 국제상학 제22 권 제3호, 2007

장명봉, 북한의 새로운 대외경제중재법(2008)개관, 중재 제333호, 대한상사중재원, 2010

53) 회원국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북한, 키르기즈그탄, 카자흐스탄이며 지난해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54) 최근 통일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북교역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남북교역에서 클레임해결 수단이 없다는 것이었다(클레임 해결수단 부재: 15.8%, 품질하자: 13.3% 등).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심의규정, 1989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정, 1999

최수영, 북·중경제관계의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와 비교분석, 통일연구원, 2011

통일신문(제516호), 2011

한국중재법, 2002

외국자료

Brace E. Bechtol, "The Implications of Cheonan Sinking: A Security Studies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Korea Institute National Unification, 2010

Dennis Deng, "China", Dispute Resolution, Review, 2010

Felix, Hess and Siew Lin Mok, "China",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eview, 2010

ICC, "Guide to Export-Import Basics", 2008

ABSTRACT

A Study on Cooperation Ways of South-North Korea for
Revitaliz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 Centering around Evaluation of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2008) of North Korea

Kwang-Soo Kim

In 2008, North Korea revised it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o some extent, the new Act reflected such international standard of arbitration as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this paper, the said Act will be evaluated, and then cooperation ways of South-North Korea on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will be suggested. In 2007,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s designated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s Inter-Korean Arbitration Committee and has made efforts to prepare follow-up measures on the two Agreements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n 2008 however, the follow-up measures has in fact been suspended. In order to revitalize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some prerequisites must be satisfied. First, Inter-Korean Arbitration Committee for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should re-open as soon as possible. Second, as North Korea recently shows interest in joining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now so called New York Convention), Governmental Authority of Rep. of Korea should also actively assist and support their joining in New York Convention. Third, both Korean governments should carry out joint study on raising the efficiency of the arbitration system which they will use. Fourth, comparative study on arbitration systems used in both countries should be conducted. Also, it may be very timely to discuss the issu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such as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Arbitration Conference" or other similar events. In conclusion, continuous study on prevention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South-North Korea and ways to resolve disputes when they arise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2008) of North Korea, Follow-up measures on the two Agreements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Joint Arbitration Rules of South-North Korea